



제 435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제3자 부당개입 금지〉

■ 안철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837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3
1. 제3자 부당개입 금지의무 신설(안 제78조의2 신설)	3
2. 제3자 부당개입에 관한 자료요구 및 신고 등 (안 제78조의3 및 제78조의4, 제78조의6 신설)	7
3. 제3자 부당개입 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안 제78조의5 신설 및 안 제84조제1항·제2항 신설, 안 제86조제 2항·제4항 신설)	1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안철수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6. 1. 2.
3. 회부연월일 : 2026. 1. 5.

II. 제안이유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 안정, 창업 지원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정책자금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요건이 제각각 달라 관련 정보가 부족한 영세 사업자들은 정책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그런데 서류 위조, 청탁 또는 알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하거나, 정책자금 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확함에도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약속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문의 제재 규정이 없어 기업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3자 부당개입의 유형을 명시하고 제3자 부당개입을 금지하는 등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법적 기

초를 마련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제3자 부당개입을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78조의2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용자 신청기업의 대표자 등에게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78조의3 신설).

다. 중소벤처진흥공단은 제3자 부당개입을 행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음(안 제78조의5 신설).

IV. 검토의견

1. 제3자 부당개입 금지의무 신설(안 제78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신 설></u>	<u>제6장의2 부당개입의 금지 등</u> <u>제78조의2(제3자 부당개입의 금지) 누구든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시행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융자(이하 “정책자금 융자”라 한다)와 관련하여 융자를 신청한 중소기업(이하 “융자 신청기업”이라 한다)의 경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이하 “제3자 부당개입”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u>1. 허위·과장된 자료로 정책자금 융자 신청 서류를 작성하거나 관련 자료를 위조·변조하여 주는 대가로 융자 신청기업으로부터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u> <u>2. 정책자금 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확한 융자 신청기업을 기망하여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자문 제공 또는 신청 대행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융자 신청기업으로부터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u>

	3. <u>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임직원의 정책자금 용자와 관련된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용자 신청기업 및 그 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u> 4. <u>정책자금 용자의 알선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용자 관련 자문 제공 또는 신청 대행을 해주거나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u> 5. <u>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용자 신청기업을 기망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용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u>
--	---

개정안은 부당개입의 금지 등에 관한 제6장의2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시행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용자와 관련하여 용자를 신청한 중소기업의 경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부당개입 행위를 구체화하여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

구체적으로는 ① 허위·과장된 자료로 정책자금 용자 신청 서류를 작성하거나 관련 자료를 위조·변조하여 주는 대가로 용자 신청기업

으로부터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정책자금 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확한 융자 신청기업을 기망하여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자문 제공 또는 신청 대행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융자 신청기업으로부터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임직원의 정책자금 융자와 관련된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융자 신청기업 및 그 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④ 정책자금 융자의 알선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융자 관련 자문 제공 또는 신청 대행을 해주거나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 ⑤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융자 신청기업을 기망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융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3자 부당개입”으로 정의하여 금지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시행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사업에 정보가 부족한 영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서류 위조, 청탁 또는 알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하거나, 정책자금 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확함에도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약속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제3자가 부당하게 개

입하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재하기 위한 별도의 제재 수단을 두지는 않고 있어 이러한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은 해당 금지규정을 마련하면서 안 제84조에 해당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여 안 제78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가 형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바, 죄형법정주의 원칙¹⁾에 따라 처벌하려는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안 제78조의2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념 중 “중소기업의 경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 “과장된 자료” 등의 개념은 그 의미가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같은 이유로 해당 금지행위의 정의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개정안이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개입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오히려 열거되지 않은 형태의 부당개입에 대해서는 규율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구체적으로 성문법률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외에도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등을 그 내용으로 함. 특히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은 성문법주의를 기초로 무엇이 범죄이고,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떤 것인가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헌법재판소(헌재 2005. 3. 31. 선고 2004헌바29 결정)는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2. 제3자 부당개입에 관한 자료요구 및 신고 등

(안 제78조의3 및 제78조의4, 제78조의6 신설)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78조의3(제3자 부당개입에 관한 자료 요구)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용자 신청기업의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술 혹은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u><신 설></u>	제78조의4(제3자 부당개입의 신고 등)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조사 혹은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로서 해당 사건에 제3자 부당개입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소제기

<신 설>	또는 기소유에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된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불송치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8조의6(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협조요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제3자 부당개입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용자 신청기업의 대표자 등에게 진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 등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조사 혹은 수사를 의뢰하도록 함.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이 있다고 판

단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제3자 부당개입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의무를 부여함.

개정안에 따른 공단의 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행정조사²⁾에 해당하는바,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운용·관리 주체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관련 진술이나 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제3자의 부당개입 여부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온라인을 통한 제3자 부당개입이 확인된 경우 관련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자료 요구 및 수사의뢰와 관련하여 일차적으로는 그 권한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부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는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률의 체계상 보다 타당하다는 입장임.

한편, 개정안에 따른 제3자 부당개입 관련 정보의 삭제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조치 요청 권한 부여의 경우 “중소벤처기업

2)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진흥공단”이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접근제한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공단의 판단만으로 법원 등으로부터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바, 해당 정보의 게재자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가 문제될 여지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같은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3. 제3자 부당개입 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안 제78조의5 신설 및 안 제84조제1항·제2항 신설,
안 제86조제2항·제4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8조의5(부당개입자 명단 공개)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3자 부당개입을 행한 자 또는 그 대표자(이하 “부당개입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수사, 공판절차 또는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에게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그 밖에 명단 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벌칙) <신 설>	제84조(벌칙) ① 제78조의2를 위반하여 제3자 부당개입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78조의2제1호에 따른 제3자 부당개입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78조의2제2호에 따른 제3자 부당개입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 설> ① (생 략) 제86조(과태료)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78조의2제3호에 따른 제3자 부당개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78조의2제5호에 따른 제3자 부당개입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78조의2제1호에 따른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현행 제1항과 같음) 제8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78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3자 부당개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제78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진흥공단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
--	---

개정안은 안 제78조의2에 따라 신설되는 제3자 부당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규정하고 있음.

먼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3자 부당개입을 행한 자 또는 그 대표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의5).

또한, 각각의 위반행위별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각 위반행위별 처벌 수준은 다음과 같음.

허위·과장된 자료로 정책자금 용자 신청 서류를 작성하거나 관련 자료를 위조·변조하여 주는 대가로 용자 신청기업으로부터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한 자(안 제78조의2제1호 위반)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안 제84조제1항제1호)하는 한편, 그러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함(안 제84조제2항).

또한, 정책자금 용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확한 용자 신청기업을 기망하여 정책자금 용자를 받을 수 있도록 자문 제공 또는 신청 대행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용자 신청기업으로부터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한 자(안 제78조의2제2호 위반)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안 제84조제1항제2호)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임직원의 정책자금 용자와 관련된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용자 신청기업 및 그 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한 자(안 제78조의2제3호 위반)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안 제84조제1항제3호)을,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용자 신청기업을 기망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용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안 제78조의2제5호 위반)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안 제84조제1항제4호)을 각각 규정하고,

정책자금 용자의 알선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용자 관련 자문 제공 또는 신청 대행을 해주거나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를 한 자(안 제78조의2제4호 위반)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안 제86조제2항)하도록 함.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제3자 부당개입 사실 확인을 위한 진술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안 제86조제4항)하도록 함.

개정안은 제3자 부당개입 금지 의무를 신설하면서 위반시 형사적·행정적 제재수단을 함께 규정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에서 신설하려는 금지행위 중 안 제78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위³⁾의 경우 현행 「형법」 제347조⁴⁾에 따른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포섭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범죄구성요건이 중복될 여지가 있는데, 형법에 따른 사기죄의 경우 그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된 반면, 개정안에 따른 법정형은 제78조의2제1호 위반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같은 조 제2호 위반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형벌규정의 체계정당성 측면의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임.

아울러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용자 신청기업을 기망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용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84조제1항제4호의 경우, 현행법이 이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⁵⁾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 3) 1. 허위·과장된 자료로 정책자금 용자 신청 서류를 작성하거나 관련 자료를 위조·변조하여 주는 대가로 용자 신청기업으로부터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정책자금 용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확한 용자 신청기업을 기망하여 정책자금 용자를 받을 수 있도록 자문 제공 또는 신청 대행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용자 신청기업으로부터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외의 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안에서 신설하고 있는 제3자 부당개입의 개념이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행위의 요건과 중복되어 법률의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제3자 부당개입 금지 의무 위반자의 명단공개 규정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처분의 주체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개정안 제78조의5제1항 단서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 제외 요건인 수사, 공판절차 또는 그 밖의 불복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해당 조항의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음.

문 의 처
02) 6788-5463

제8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68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